

대법원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①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 4명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②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1. 사안의 개요

- 피고(대형 유통회사)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왔음
- 보험회사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하여 그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 최근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 후,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였음

■ 그런데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중 보험회사들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데이터베이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개인정보 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피고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함

■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있는 원고들(이하 '원고들 ①')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이하 '원고들 ②')로 나뉨

■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원고들 일부 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함

■ 원심: 원고들 일부 승

-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들 ②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②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들 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각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 ▣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다. 판단 근거

▣ 원고들 ① 부분

- 원고들 ①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원고들 ① 상고기각
- 원고들 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피고 상고기각

▣ 원고들 ② 부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원고들 ② 상고기각

4. 판결의 의의

- ▣ 대법원은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 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
- ▣ 대법원은 원고들 ②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
- ▣ 이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임